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여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우리군 정원을 새롭게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 615명 ⇒ 583명 (△32명)
 - ▶ 집행기관의 정원 : 603명 ⇒ 571명(△32명)
 - ▶ 의회사무과 정원 : 12명(변동없음)

나. 기관별 직급 조정(안 별표1)

-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구분	합계	집행기관					의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개정 전	615	603	285	141	44	133	12
개정 후	583	571	265	133	40	133	12
증감	△32	△32	△20	△8	△4	-	-

-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

구분	합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개정 전	615	1	485	5	25	124	150	116	65	1	22	17	89
개정 후	583	1	460	4	24	119	142	110	61	1	20	16	85
증감	△32	-	△25	△1	△1	△5	△8	△6	△4	-	△2	△1	△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8.6.20~6.29(10일간), 특기할 사항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본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83 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71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2명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직종 · 직급별		합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과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83	571	265	133	40	19	114	12
정무직	소계	1	1	1					
	군수	1	1	1					
일반직	소계	460	453	232	85	17	17	102	7
	4급	2	2	1	1				
	4~5급	2	2	2					
	5급	24	22	9	4	1	1	7	2
	6급	119	117	62	16	4	5	30	2
	7급	142	140	80	25	6	5	24	2
	8급	110	109	56	28	4	2	19	1
	9급	61	61	22	11	2	4	22	
연구직	소계	1	1	1					
	연구관								
	연구사	1	1	1					
지도직	소계	20	20		20				
	지도관	1	1		1				
	지도사	19	19		19				
별정직	소계	16	16		16				
	6급상당	15	15		15				
	7급상당	1	1		1				
기능직	소계	85	80	31	12	23	2	12	5
	기능6급	2	2			2			
	기능7급	7	6	3	1	1		1	1
	기능8급	13	12	6	1	3	1	1	1
	기능9급	27	26	10	6	6		4	1
	기능10급	36	34	12	4	11	1	6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본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15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03명</u></p> <p>2. 의회사무과의 정원 : <u>12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583명</u>-----,-----.</p> <p>1. ----- : <u>571명</u></p> <p>2. ----- : <u>12명</u></p>

현행									개정안								
[별표1]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별표1]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과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과
		소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615	603	285	141	44	19	114	12	총계	583	571	265	133	40	19	114	12
정무직 계	1	1	1						정무직 계	1	1	1					
군수	1	1	1						군수	1	1	1					
일반직 계	485	478	252	90	17	17	102	7	일반직 계	460	453	232	85	17	17	102	7
4급	3	3	1	2					4급	2	2	1	1				
4~5급	2	2	2						4~5급	2	2	2					
5급	25	23	10	4	1	1	7	2	5급	24	22	9	4	1	1	7	2
6급	124	122	67	16	4	5	30	2	6급	119	117	62	16	4	5	30	2
7급	150	148	86	27	6	5	24	2	7급	142	140	80	25	6	5	24	2
8급	116	115	61	29	4	2	19	1	8급	110	109	56	28	4	2	19	1
9급	65	65	25	12	2	4	22		9급	61	61	22	11	2	4	22	
연구직 계	1	1	1						연구직 계	1	1	1					
연구사	1	1	1						연구사	1	1	1					
지도직 계	22	22		22					지도직 계	20	20		20				
지도관	1	1		1					지도관	1	1		1				
지도사	21	21		21					지도사	19	19		19				
기능직 계	89	84	31	12	27	2	12	5	기능직 계	85	80	31	12	23	2	12	5
기능6급	3	3	2		1				기능6급	2	2			2			
기능7급	8	7	3	1	2		1	1	기능7급	7	6	3	1	1		1	1
기능8급	15	14	6	1	4	1	2	1	기능8급	13	12	6	1	3	1	1	1
기능9급	27	26	8	6	9		3	1	기능9급	27	26	10	6	6		4	1
기능10급	36	34	12	4	11	1	6	2	기능10급	36	34	12	4	11	1	6	2
별정직 계	17	17		17					별정직 계	16	16		16				
6급상당	16	16		16					6급상당	15	15		15				
7급	1	1		1					7급	1	1		1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